



## 「우리 (영업점명) 적금 (기본형)」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우리 (영업점명) 적금(기본형)」

· 상품특징 : 특정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특판적금

###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ul> <li>실명의 개인(1인 1계좌)</li> <li>특정영업점 전용적금으로 영업점에서 선택한 유형으로 영업점에서 설정한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li> <li>1개의 영업점에서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우리 (영업점명) 적금(유형)」의 (영업점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형, 급여형, 청약저축형, 해외송금형, 공과금형, 신용카드형 중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li> </ul>		
상품명 및 유형	<ul><li>상품명 중 (영업점명)은 이 적금을 판매하는 우리은행의 영업점명으로 지정</li><li>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임</li></ul>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판매기간	• 영업점별로 판매기간 시작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최장 15일 이내)		
계약기간	• 12개월		
적용이율	• 기본금리(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계약기간기본금리비 고		·
	12개월	연 3.30%	세금납부 전 '25.06.02. 기준

구 분	No oribank.con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6.02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 이자계산방법	•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 금리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중도 해지이자율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보유기간 이 율 비 고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연 0.15%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가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계산방법(예시)  7분이용×50% **보유일수/제약일수 **보유일수/계약일수 **보유일수/계

구 분		H 용	
	• 만기일 당시 영	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경과기	안 의율	
마기층이유	1개월 이	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50%	
만기후이율	1개월 초과~67	배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b>30</b> %	
	6개월 초	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	
	※ 약정이율 : 만기	(또는 재예치)시점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1회차 2회차	3회차 만기일 ▼ ••• ▼	
만기이자			
산출근거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li>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li> <li>※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li> </ul>		
만기자동해지	<ul> <li>신규일에 고객이 신청한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로 만기해지 원리금이 자동 입금되는 서비스</li> <li>고객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li> </ul>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원금과 소정의 이자를</b>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ul> <li>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li> <li>※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li> <li>※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li> </ul>	
재예치	불가능	해당사항 없음	

	<b>(1) *** *** *** *** *** *** *** *** *** *</b>
구 분	내 용
일부해지 (자유적립식)	* 초입금을 제외한 지정 입금 건별로 일부 해지 가능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로 한정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제한사항 및 질권 설정	• 공동명의 가입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계약해지방법	<ul> <li>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li> <li>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li> <li>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li> </ul>
판매한도	• 전체 80만좌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자료열람 요구권	<ul>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휴면예금 및 출연	<ul> <li>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li> </ul>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 「우리 (영업점명) 적금 (공과금형)」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우리 (영업점명) 적금(공과금형)」

· 상품특징 : 특정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특판적금으로 우리은행으로 공과금 이체 시 우대금리 제공

####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특정영업점 전용적금으로 영업점에서 선택한 유형으로 영업점에서 설정한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 - 1개의 영업점에서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우리 (영업점명) 적금(유형)」의 (영업점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형, 급여형, 청약저축형, 해외송금형, 공과금형, 신용카드형 중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상품명 및 유형	• 상품명 중 (영업점명)은 이 적금을 판매하는 우리은행의 영업점명으로 지정 •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임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판매기간	• 영업점별로 판매기간 시작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최장 15일 이내)		
계약기간	• 12개월		
	• 기본금리(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		
적용이율	계약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비고		
	12개월 연 3.10% 연 3.60% 세금납부 전 '25.06.02. 기준		

구 분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6.02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대금리	• 우리은행으로 공과금 자동이체 시 – 연 0.50%p 우대  ※ 신규일(판매기간 중 가입한 날)에 해당하는 달의 초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6개월 이상(연속 여부 따지지 않음)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 보유 시 우대  *전화/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휴대폰,인터넷)요금		
계약기간 이자계산방법	•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 금리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중도 해지이자율	보유기간     이 율     비 고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계산방법(예시)    전 0.1%   기본이율×50%   기본이율×70%   기본이율×80%   기본이율×90%   기본이율×10%   기본이율×90%   기본이율×90%		

		( <mark>소리)                                    </mark>	
구 분	내용 내용		
	• 만기일 당시 영	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경 <b>과기</b> ( 1개월 이 1개월 초과~67 6개월 초 ※ 약정이율 : 만기	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x 50%       내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x 30%	
만기이자 산출근거	계산한 이자를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합계 (원미만 절사)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3 및 사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li>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li> <li>※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li> </ul>		
만기자동해지	<ul> <li>신규일에 고객이 신청한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로 만기해지 원리금이 자동 입금되는 서비스</li> <li>고객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li> </ul>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원금과 소정의 이자를</b>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예치	불가능	해당사항 없음	

(0	RI	0	우리	은행	
1	//				
_ E					

구 분		내 용	wooribank.com
일부해지 (자유적립식)	가능	• 초입금을 제외한 지정 입금 건별로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로 한정 (해지 시	
제한사항 및 질권 설정	• 예금담보대출은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계약해지방법	• 자동해지 서비: • 계좌의 만기가 아닌 만기해지.	<b>I면 채널</b> 을 통해 해지 가능 스 이용 가능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 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 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지급
판매한도	• 전체 80만좌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년 금융소비자는 전 (단, 계약체결일로 해당 계약의 하 • 은행은 그 해지 여부를 통지하기 사유 없이 금융 해당 계약을 하 금융소비자에거 * 부적합한 금 부적정하다는 왜곡하여 설팅	네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불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을 보다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이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용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원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달로부터 1년 이내 것)에 서면 등으로 응소비자에게 수락 하고, 만일 정당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기될 경우 은행은 없습니다. 은 금융상품에 대해 중에 대해 거짓 또는 테19조 제1항, 제3항),
자료열람 요구권 휴면예금 및 출연	은행이 기록 및 요구할 수 있습 - 계약체결에 광고 자료, 및 운영 등이 • 은행은 법령, 저 이를 금융소비기 • 적금 만기일 및 해지하지 않을 휴면예금은 "서 서민금융진흥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자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시합니다.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현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배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배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들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렇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여 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일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	나본 및 청취 포함)을 금융상품 등에 관한 부통제기준의 제정 시유가 있는 경우 시합니다.   5년 이내 계좌를 기금 및 출연에 따라 수 있으며, 이 경우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ㆍ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 「우리 (영업점명) 적금 (신용카드형)」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우리 (영업점명) 적금(신용카드형)」

· 상품특징 : 특정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특판적금으로 우리은행으로 우리카드사 신용카드 결제실적

보유 시 우대금리 제공

###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특정영업점 전용적금으로 영업점에서 선택한 유형으로 영업점에서 설정한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 - 1개의 영업점에서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우리 (영업점명) 적금(유형)」의 (영업점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형, 급여형, 청약저축형, 해외송금형, 공과금형, 신용카드형 중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상품명 및	• 상품명 중 (영업점명)은 이 적금을 판매하는 우리은행의 영업점명으로 지정		
유형	•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임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판매기간	• 영업점별로 판매기간 시작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최장 15일 이내)		
계약기간	• 12개월		
	• 기본금리(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		
적용이율	계약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비고		
	12개월 연 3.10% 연 3.60% 세금납부 전 '25.06.02. 기준		

구 분	내 용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6.02.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대금리	• 우리은행으로 우리카드사 신용카드 결제 실적 보유 시 - 연 0.50%p 우대 ※ 신규일(판매기간 중 가입한 날)에 해당하는 달의 초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6개월 이상(연속 여부 따지지 않음)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우리카드사 신용 카드 결제 출금실적 보유 시 우대
계약기간 이자계산방법	•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 금리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중도 해지이자율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보유기간 이 율 비 고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연 0.15%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원 0.15%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계산방법(예시)    전 0.1%   기본이용×50%   기본이용×70%   기본이용×80%   기본이용×90%   기본이용×90%

	<b>②</b> 우리은행
(Tokal	₩ 주더는 W
\ \mathref{infty}	
_ E	

구 분	내 용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경과기간	이 율	
만기후이율	1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b>50</b> %	
C* +- E	1개월 초과~6개월 이	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30%	
	6개월 초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 약정이율 : 만기(또는	재예치)시점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	l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1회차 2회차 3회차	H 12회차 만기일 ▼ ■ ■ ■	
만기이자	-		
산출근거	<b>—</b>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	
		<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li>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li> <li>※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li> </ul>		
만기자동해지	자동 입금되는 서비	신청한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로 만기해지 원리금이 스 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	
예금자보호 여부	예금보험공사 나 ᄎ그 오 사 표	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원금과 소정의 이자를</b> 여 <b>1인당 "5천만원까지</b>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 전	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난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보과될 수 있음  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예치	<b>불가능</b> 해당	사항 없음	

	14	•	우리은	은행	
4	//	eta,	d d		
_ E					

구 분		내 용	wooribank.com
일부해지 (자유적립식)	가능	• 초입금을 제외한 지정 입금 건별로 '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로 한정 (해지 시	
제한사항 및 질권 설정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계약해지방법	• 자동해지 서비: • 계좌의 만기가 아닌 만기해지.	<b>I면 채널</b> 을 통해 해지 가능 스 이용 가능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 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 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l급
판매한도	• 전체 80만좌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년 금융소비자는 전 (단, 계약체결일로 해당 계약의 하 • 은행은 그 해지 여부를 통지하기 사유 없이 금융 해당 계약을 하 금융소비자에거 * 부적합한 금 부적정하다는 왜곡하여 설년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불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을 하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지하여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원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0조 제2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0조 제2항)	함로부터 1년 이내 것)에 서면 등으로 응소비자에게 수락 하고, 만일 정당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될 경우 은행은 없습니다. 음 금융상품에 대해 등에 대해 거짓 또는
자료열람 요구권	은행이 기록 및 요구할 수 있습 - 계약체결에 광고 자료, 및 운영 등0 • 은행은 법령, 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저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시 ·니다.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 비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비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다에게 알리고 <b>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b>	나본 및 청취 포함)을 금융상품 등에 관한 부통제기준의 제정 사유가 있는 경우
휴면예금 및 출연	<b>해지하지 않을</b> 휴면예금은 <b>"서</b> 서민금융진흥원	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 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실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	l금 및 출연에 따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 「우리 (영업점명) 적금 (급여(연금)형)」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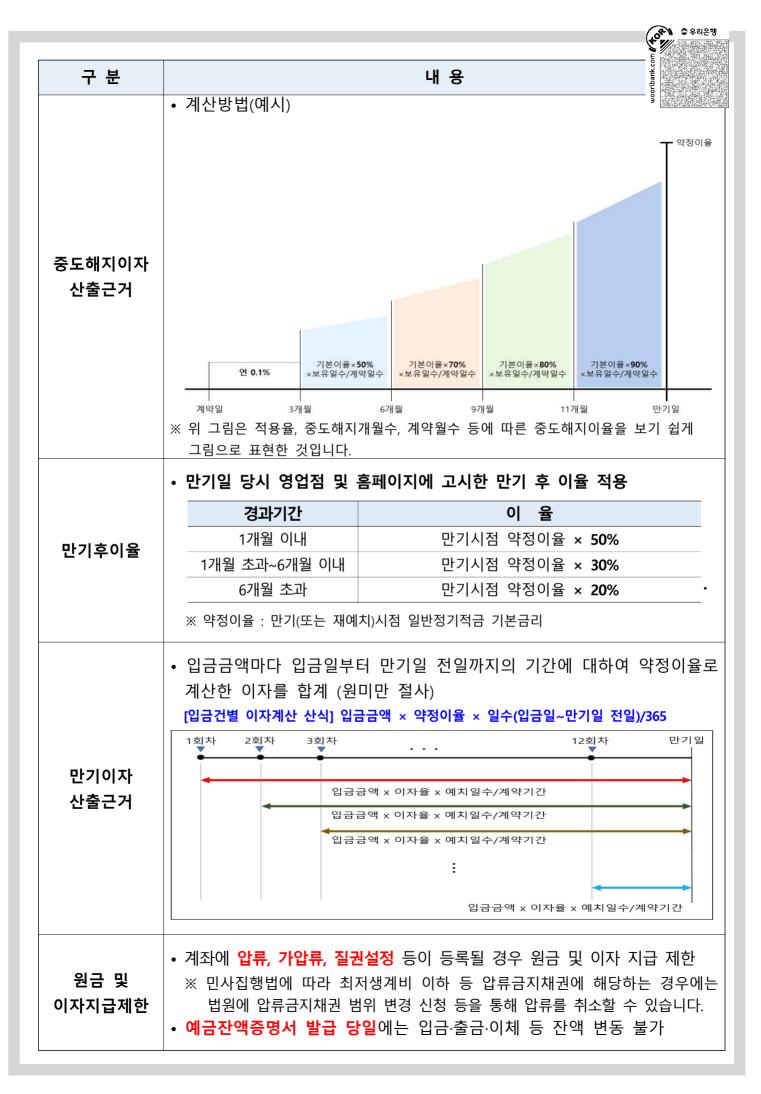
· 상 품 명 : 「우리 (영업점명) 적금(급여(연금)형)」

· 상품특징 : 특정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특판적금으로 급여(연금)이체 시 우대금리 제공

#### 2 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ul> <li>실명의 개인(1인 1계좌)</li> <li>특정영업점 전용적금으로 영업점에서 선택한 유형으로 영업점에서 설정한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li> <li>1개의 영업점에서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우리 (영업점명) 적금(유형)」의 (영업점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형, 급여형, 청약저축형, 해외송금형, 공과금형, 신용카드형 중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li> </ul>		
상품명 및 유형	• 상품명 중 (영업점명)은 이 적금을 판매하는 우리은행의 영업점명으로 지정 •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임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판매기간	• 영업점별로 판매기간 시작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최장 15일 이내)		
계약기간	• 12개월		
	• 기본금리(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		
적용이율	계약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비 고		
	<b>12개월 연 3.10% 연 3.60%</b> 세금납부 전 '25.06.02 기준		

구 분	내 용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6.02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리은행으로 급여 <sup>주1)</sup> 또는 연금 <sup>주2)</sup> 이체 시 – 연 0.50%p 우대 ※ 신규일(판매기간 중 가입한 날)에 해당하는 달의 초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6개월 이상(연속 여부 따지지 않음)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이체 시 적용		
우대금리	주1) 급여이체 실적은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 한 경우 인정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위 1,2,3에 해당하더라도 개인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실적인정에서 제외 주2) 연금이체 실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입금 시		
계약기간 이자계산방법	•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 금리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중도	보유기간 이 율 비 고		
중포 해지이자율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우리은	- πu
(,0	C //	•	우디근	- %
1	//			
E				
_ 통			1000	Service Service

구 분		·····································	
만기자동해지	• 신규일에 고객이 신청한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로 만기해지 원리금이 자동 입금되는 서비스 •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원금과 소정의 이자를</b>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예치	불가능	해당사항 없음	
일부해지 (자유적립식)	가능	• 초입금을 제외한 지정 입금 건별로 일부 해지 가능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로 한정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제한사항 및 질권 설정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계약해지방법 판매한도	<ul> <li>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li> <li>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li> <li>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li> <li>전체 80만좌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li> </ul>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년 금융소비자는 전 (단, 계약체결일로 해당 계약의 히 • 은행은 그 해지 여부를 통지하기 사유 없이 금융 해당 계약을 히 금융소비자에거 * 부적합한 금 부적정하다는 왜곡하여 설팅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거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시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기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용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생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구 분	H 용
휴면예금 및 출연	<ul> <li>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li> </ul>
자료열람 요구권	<ul>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 「우리 (영업점명) 적금 (청약저축형)」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우리 (영업점명) 적금(청약저축형)」

· 상품특징 : 특정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특판적금으로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우대

금리 제공

##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특정영업점 전용적금으로 영업점에서 선택한 유형으로 영업점에서 설정한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  - 1개의 영업점에서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우리 (영업점명) 적금(유형)」의 (영업점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형, 급여형, 청약저축형, 해외송금형, 공과금형, 신용카드형 중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상품명 및	• 상품명 중 (영업점명)은 이 적금을 판매하는 우리은행의 영업점명으로 지정			
유형	•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임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판매기간	• 영업점별로 판매기간 시작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최장 15일 이내)			
계약기간	• 12개월			
	• 기본금리(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			
적용이율	계약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비고
	12개월	연 3.10%	연 3.60%	세금납부 전 '25.06.02. 기준

구 분	내 용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6.02.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대금리	• 우리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sup>주1)</sup> 시 - 연 0.50%p 우대 ※ 적금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회차 이상 월 납입금을 불입하고 적금 만기 해지 시 까지 보유 시 적용  주1) 적금 가입 월의 월초부터 익월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신규 시			
계약기간 이자계산방법	•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금리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중도 해지이자율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보유기간       이 율       비 고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최저이율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최저이율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연 0.15%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 기본이율: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계산방법(예시)    전 0.1%   기본이용×50%   기본이용×70%   기본이용×80%   기본이용×90%   기본이용×90%			

구 분			내 용	vooribank.com (
	• 만기일 당시 영	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om
	경과기간		이 율	
만기후이 <del>율</del>	1개월 이	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50%	
년 기구의 <u>-</u>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b>30</b> %	
	6개월 초	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 <b>20</b> %	•
	※ 약정이율 : 만기	(또는 재예	치)시점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	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입금건별 이자계신	· 산식] 입	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	)/365
	1회차 2회차 ▼ ▼	3회차 ▼ ——●	12회차 ▼ 	만기일 
만기이자	4	917	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
산출근거	<b>←</b>		금액 x 이자율 x 에시일구/계탁기간 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b></b>
		입금	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b></b>
			<b>.</b>	
			4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	계약기간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li>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li> <li>※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li> </ul>			
만기자동해지	<ul> <li>신규일에 고객이 신청한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로 만기해지 원리금이 자동 입금되는 서비스</li> <li>고객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li> </ul>			
	, ,		, , , , , , , , , , , , , , , , ,	•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합하여	·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원금과 소정의</b> <b>1인당 "5천만원까지</b> "(본 은행의 여타 <u>년</u>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 관련 부과	네종합저축 가입 가능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기 ·될 수 있음 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거나 세금이
재예치	불가능	해당사형	·····································	

ORN	🖨 우리은행
6.1	
mo:	

구 분	내 용				
. –	• 초입금을 제외한 지정 입금 건별로 일부 해지 가능				
일부해지 (자유적립식)	가능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로 한정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제한사항 및	• 공동명의 가입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질권 설정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계약해지방법	<ul> <li>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li> <li>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li> <li>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li> <li>전체 80만좌</li> </ul>				
판매한도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자료열람 요구권	<ul>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휴면예금 및 출연	<ul> <li>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li> </ul>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 「우리 (영업점명) 적금 (해외송금형)」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우리 (영업점명) 적금(해외송금형)」

· 상품특징 : 특정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특판적금으로 우리은행에서 해외송금 시 우대금리 제공

####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특정영업점 전용적금으로 영업점에서 선택한 유형으로 영업점에서 설정한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  - 1개의 영업점에서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우리 (영업점명) 적금(유형)」의 (영업점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형, 급여형, 청약저축형, 해외송금형, 공과금형, 신용카드형 중 1개의 상품만 가입가능)				
상품명 및	• 상품명 중 (영업점명)은 이 적금을 판매하는 우리은행의 영업점명으로 지정				
유형	•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임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판매기간	• 영업점별로 판매기간 시작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최장 15일 이내)				
계약기간	• 12개월				
	• 기본금리(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				
적용이율	계약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비고				
	<b>12개월 연 3.10% 연 3.60%</b> 세금납부 전 '24.06.02. 기준				

구 분	Moortbark Cor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6.02.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대금리	• 우리은행에서 해외송금 <sup>주1)</sup> 시 - 연 0.50%p 우대 ※ 신규일(판매기간 중 가입한 날)에 해당하는 달의 초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해외송금 실적이 있는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연속 여부 따지지 않음) 주1) 해외송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에 한하며 해외로부터 국내로 받는 송금은			
계약기간 이자계산방법	제외(송금인과 출금계좌 예금주가 동일한 고객인 경우만 인정)  •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 금리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중도 해지이자율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보유기간       이 율       비 고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최저이율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최저이율       연 0.15%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연 0.15%         **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중도해지이율 산출근거	• 계산방법(예시)  7분이율×50%			

구 분				
	• 만기일 당시 영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경과기:	<del>-</del>		
만기후이율	1개월 0 1개월 초과~6 <sup>7</sup>			
	6개월 초			
	※ 약정이율 : 만기	기(또는 재예치)시점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3회차 만기일 만기일		
DLTI OLT	1회차 2회차	3회차 만기일 ▼ ••• 만기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Cecy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		
	70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원금 및		<b>나압류, 질권설정</b>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이자지급제한	-	∥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신규일에 고격	객이 신청한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로 만기해지 원리금이		
만기자동해지	자동 입금되는			
		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 		
예금자보호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여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b>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b>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	합인) 보오립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세제혜택	가능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예치	<b>불가능</b> 해당사항 없음			
일부해지	-1 L	• 초입금을 제외한 지정 입금 건별로 일부 해지 가능		
(자유적립식)	가능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로 한정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18	0	우리	은형
4	//	T a		
_ E				

구 분	내 용
제한사항 및	• 공동명의 가입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질권 설정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계약해지방법	<ul> <li>장답점 및 미대인 제월을 등에 에서 기능</li> <li>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li> <li>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li> </ul>
판매한도	• 전체 80만좌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자료열람 요구권	<ul>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휴면예금 및 출연	<ul> <li>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li> </ul>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